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취소 및 구직촉진수당 반환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3. 19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	
김O원	80.12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취소 및 구직촉진수당 반환	취업지원신청일 당시 산재휴업급여 수급 중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에 해당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취소 및 구직촉진수당 반환	폐문 부재, 수취인 불명	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149 번길 4

4. 공고기간: 2024. 3. 19.~2024. 4. 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하윤이(Tel. 051-860-19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